#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99 발의연월일: 2025. 2. 28.

발 의 자: 백종헌 · 서천호 · 최보윤

정성국 • 박충권 • 진종오

이헌승 · 고동진 · 정희용

박정하 · 김용태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나,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.

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해자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를 받았다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책 임 면탈을 막는 동시에 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.

대법원 2018다287935 판결에서 "통보 및 조회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8조제1항(보험급여 후 구상)에 관한 통보의무자를 보험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하여 다양화하는 등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

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"고 명시함.

이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,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,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등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보험급여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내용을 공단이 알수 있도록 하여 제3자 행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8조의2 및 제119조제4항제3호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조의2(제3자 행위로 발생한 보험급여에 관한 통보)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

- ②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등 제58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제3자의행위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
- ③ 제1항·제2항에 따른 통보의 대상,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9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단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58조의2(제3자 행위로 발생한
	보험급여에 관한 통보) ① 가
	입자 및 피부양자는 제3자의
	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
	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
	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
	<u>야 한다.</u>
	②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
	사 등 제58조에 따른 제3자의
	행위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
	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제3
	자의 행위로 이 법에 따른 보험
	급여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
	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
	<u>없이 알려야 한다.</u> ③ 제1항·제2항에 따른 통보
	의 대상,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
	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
	로 정한다.
제119조(과태료) ① ~ ③ (생	<u> </u>
략)	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<ul><li>4</li></ul>
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	l l

현 행	개 정 안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3의2. 제58조의2제2항을 위반하
	여 공단에 통보하지 아니하거
	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